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62
----------	------

2020년 12월 21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25. 김재형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0. 12. 15.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20년 12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가 청년 당사자들만의 문제를 넘어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차원의 청년문제 해결방안이 아닌 서울시에 맞는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 함.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등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문제는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함.
- 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청년 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일자리·주거·청년 일반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는 등 서울시의회가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음.

###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청년층은 계층적으로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는 이행기로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공적 지원대상이며,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예비 주역으로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 주거 불안, 신용 악화 등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최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sup>2)</sup>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8.9%로 OECD 37개 국가 중 20위이며, OECD 평균 청년실업률(15~29세)이 4.4%p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0.9%p 증가해 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냄.

1)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87조에 근거하여 구성됨.

2) 2009-2019년 청년(15-29세) 고용지표 OECD 비교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20.9.

- 특히 서울 청년 실업률은 8.8%로, 서울 전체 실업률 4.4% 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저성장 경제에 따른 실업률 증가 및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sup>3)</sup>
- 청년 체감실업률도 통계 작성('15년) 이후 20%대를 지속 상회하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6%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sup>4)</sup>
-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 불안, 신용 악화 등 총체적인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 재난수준의 청년고용 문제는 청년 주거 빈곤, 부채, 결혼기피 등의 문제로 확대 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sup>5)</sup>, 주거 빈곤<sup>6)</sup> 등 악순환의 시스템에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서울시 청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청년 친화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청년 인적 자원을 사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한국 미래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는 시급한 사회 현안이라고 하겠음.

3) 서울시 청년(15-29세) 고용지표 통계, 서울열린데이터연구, 2020.

4) 2020년 「청년체감실업률」, 통계청, 2020. 7

5) 2019년 기준 서울시 전체 실업률 4.4%,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8.8%, '2020년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청년청.

6) 34세 이하 1인 청년가구의 단독, 다가구 및 고시원 등의 주거비용은 67.1%이며, 단위면적(㎡)당 임대료는 중대형 아파트 보다 약 1.3배가 비싼 1.5만원으로 나타남, 위의 자료.

- 최근 서울시는 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청년이 현실과 미래의제를 해결할 역량과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축적하는 청년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직속 기구로 청년청을 신설(2019.1.1.)한 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주요부서가 서울시 각 실국(청년청,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주택건축본부, 노동민생정책관, 문화본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붙임2 참조),
- 특별위원회의 제안이유와 같이 서울시 각 실국과 체계적인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올해 「청년기본법」<sup>7)</sup>과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제정(각각 2020. 2. 4., 2020. 8. 4.) 및 시행(2020. 8. 5.)됨으로써, 이에 따른 실질적인 서울형 청년정책 추진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이상을 종합하면, 청년문제가 사회 구조적 문제점과 연관되고 시급한 사회 현안인 점, 청년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서울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 발굴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서울시의회는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통합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해 제8대~제9대에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10대에는 「청년특별위원회」('18. 9. 14~ '19. 9. 13.), 「청년정책 특별위원회」('19. 11. 18 ~ '20. 11. 17)를 구성해 활동한 바 있음.

7)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sup>8)</sup>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희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는 별도 의견 없음.

---

8)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2062
----------	------

발의연월일: 2020년 11 월 25 일

발 의 자: 김재형, 권수정, 김호평, 송정빈,  
여 명, 오현정, 이동현, 이병도,  
임만균, 정진술, 최 선, 추승우,  
한기영 의원(13명)

##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가 청년 당사자들만의 문제를 넘어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차원의 청년문제 해결방안이 아닌 서울시에 맞는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 함.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등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문제는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함.
- 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 3. 참고 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재의 실태 속에서 우리는 서울시 시의원이자 한 시민으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려 한다.
- 이에 우리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또한, 우리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등의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에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
- 서울시의 10% 넘는 청년실업률, 40%에 이르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빈곤율, 신용악화의 원인인 학자금 부담, 실효성이 없는 청년 복지정책 등의 청년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이에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는 등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0.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